
무배당 GOLDEN TIME 연금보험 약관

◆ 목 차 ◆

◆ 가입자 유의사항 ◆	15
◆ 주요내용 요약서 ◆	17
◆ 보험용어 해설 ◆	19
무배당 GOLDEN TIME 연금보험약관	20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	20
제1조 【목적】	20
제2조 【용어의 정의】	20
제3조 【통화】	21
제4조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21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1
제6조 【연금지급형태】	21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1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2
제9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22
제10조 【보험금의 청구】	22
제11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23
제12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23
제13조 【주소변경통지】	24
제14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24
제15조 【대표자의 지정】	24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24
제16조 【계약 전 알릴 의무】	24
제17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24
제18조 【사기에 의한 계약】	25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25
제19조 【보험계약의 성립】	25
제20조 【청약의 철회】	26
제21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26
제22조 【계약의 무효】	27

제23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27
제24조 【보험나이】	28
제25조 【계약의 소멸】	28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8
제26조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28
제27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29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29
제2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29
제29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29
제30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30
제31조 【해지환급금】	30
제32조 【보험계약대출】	30
제33조 【배당금의 지급】	30
제34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30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31
제35조 【분쟁의 조정】	31
제36조 【관할법원】	31
제37조 【소멸시효】	31
제38조 【약관의 해석】	31
제39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31
제40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32
제41조 【개인정보보호】	32
제42조 【준거법】	32
제43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32
(별 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33
(별 표2) 재 해 분 류 표	35
(별 표3) 해지환급금의 계산	36
(별 표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38

◆ 가입자 유의사항 ◆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또는 현재의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또는 현재의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저축성상품

-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보험(금리연동형보험)상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자산연계형

- 채권금리연계형
이 보험은 이율확정기간 중 중도해지시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시장가격조정률(MVA) 계산 공식에 따라 가입시점의 공시이율보다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높은 경우 적립액보다 해지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시장가격조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관 (별표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 타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 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민원사항

유형	확정금리 상품으로 알고 가입한 고객이 중도에 해지 할 경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A는 저금리시대에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안정적인 연금보험 가입을 희망 <li style="padding-left: 20px;">보험설계사 B는 가입 시 제공되는 이자율에 년3.0% 보너스 이율을 더하여 확정금리로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라고 가입을 유도 · 고객 A는 확정금리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보너스 금리 또한 계약을 10년을 유지한 경우에만 가입 후 1년만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해지를 원하였으나 해지환급금이 예상한 금액보다 적어 민원을 제기
유의사항	<p>⇒ 가입하신 상품은 채권연계형 확정금리 상품으로 해지 시점의 공시이율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적립액보다 작아 질 수 있는 상품입니다.</p> <p>회사가 확정금리로 이자를 주기 위해서는 이율확정기간 동안 특정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해지를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조기에 채권을 팔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금리변동에 따라서 투자한 채권의 가치가 변화하게 되어 적립액을 전부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액이 시장가격조정률(MVA)에 따라 조정되므로, 적립액보다 해지환급금이 작아지는 경우도 발생가능합니다. (별표3. '해지환급금의 계산'참조)</p> <p>또한 보너스 이율의 경우 10년을 유지한 계약에 한하여 계약 후 1년동안만 제공함으로, 이율확정기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보너스 이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p>

◆ 주요내용 요약서 ◆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께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함.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 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4.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5. 계약취소

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보험용어 해설 ◆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무배당 GOLDEN TIME 연금보험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생존이나 사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이 계약은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으로 구성되며,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 보장계약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 연금계약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제 5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 호에 의해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생활자금을 지급받거나(1 형(생활자금형, 10 년 이율확정형)에 한함),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에 연금을 지급 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 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이 계약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은 가입시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이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은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이고 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확정연금의 최종 지급일까지입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 【통화】

① 미국달러형 계약의 통화는 아메리카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합니다)의 통화로 하며, 미국달러형 계약과 관련한 모든 금전의 수수(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연금의 지급 및 보험계약대출 등)는 미국의 통화로 합니다.

② 중국위안화형 계약의 통화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합니다)의 통화로 하며, 중국위안화형 계약과 관련한 모든 금전의 수수(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연금의 지급 및 보험계약대출 등)는 중국의 통화로 합니다.

제4조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회사는 이율확정기간(이하 “이율확정기간”이라 한다) 10년 동안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연금계약 적립액을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여 설정된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에서 운용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2.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생활자금 지급기간(“계약일 이후 만 1개월 경과시점부터 만 120개월 경과시점까지” 또는 “계약일 이후 만 13개월 경과시점부터 만 120개월 경과시점까지”)동안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 생활자금을 지급(1형(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에 한함)
3.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 형태에 따라 연금을 지급

제6조 【연금지급형태】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 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보증지급기간:10년/20년)	정액형 체증형(5%/10%, 10년간 체증)
	보증금액부	
확정연금형(10년/15년/20년)		
상속연금형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 5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 25 조(계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

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 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1형(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생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개시시점까지 지급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미지급된 생활자금을 연금개시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더하여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액으로 지급받는 방법 중에서 한가지를 연금지급 개시일 전일까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2항에서 정한 미지급된 생활자금의 수령 방법을 연금지급 개시일 전일까지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생활자금을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더하여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액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 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업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한하여 제 5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 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한하여 제 5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9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1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 10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 5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 호의 생활자금 및 제 3 호의 연금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 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 1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4(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하여 제 1 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0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 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 5 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 7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4 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 3 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 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임.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12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5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5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제15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 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 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6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6 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 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 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 31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 16 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9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 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 1 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1형(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의 경우 이미 지급된 생활자금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2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1형(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의 경우 이미 지급된 생활자금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 2 호의 만 15 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실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23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납입보험료
 2.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개시나이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계약자는 제 1 항 제 2 호의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개시나이를 연금개시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⑤ 계약자가 제 2 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제3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4조 【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 22 조(계약의 무효) 제 2 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 1 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 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 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 년 10 월 2 일, 현재(계약일): 2016 년 4 월 13 일

⇒ 2016 년 4 월 13 일 - 1988 년 10 월 2 일 = 27 년 6 월 11 일 = 28 세

제25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6조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제 1 항에서 보험료라 함은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합한 일시납 보험료를 말 합니다.

③ 회사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④ 회사는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 제 16 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 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 17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단,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⑤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27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 31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 22 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31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서면동의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제29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0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 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1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별표3 “해지환급금의 계산” 참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④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이율확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연금계약 적립액에 (1-시장가격조정률(MVA, Market Value Adjustment))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하며 계약이 이율확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3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5항에서 정한 “초년도 보너스적립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제4항의 시장가격조정률(MVA)이 20%이상인 경우는 20%를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제32조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 1 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④ 미국달러형 계약의 경우 제 3 조(통화) 제 1 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은 미국의 통화로 지급되며, 보험계약대출금 및 보험계약대출이자도 모두 미국의 통화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 ⑤ 중국위안화형 계약의 경우 제 3 조(통화) 제 2 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은 중국의 통화로 지급되며, 보험계약대출금 및 보험계약대출이자도 모두 중국의 통화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제33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34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보험의 연금계약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또는 16일에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여 결정하며,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은 보험가입시점부터 이율확정기간동안 변동없이 확정 적용합니다.
- ③ 이율확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중국위안화형 계약의 경우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하고, 미국달러형 계약의 경우 연복리 1.5%를 최저한도로 하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후에는 미국달러형 및 중국위안화형 모두 1.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④ 연금계약 적립액 계산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간 연복리 3.0%의 이율(이하 “초년도 보너스

적립이율”이라 합니다)을 제2항에 정한 공시이율에 더하여 적립이율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약이 이율확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초년도 보너스적립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1일 또는 16일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2회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연1%인 경우(공시이율 적용시점의 최저보증이율이 연2%인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연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연2%)로 적립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5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8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9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에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0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1조 【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2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3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 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사망보험금 (약관 제5조 제1호)

지급사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내용	일시납 보험료의 10% + 지급사유 발생 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 (다만, 해지환급금이 사망보험금보다 큰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생활자금 (약관 제5조 제2호)

지급사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생활자금 지급기간(“계약일 이후 만 1개월 경과시점부터 만 120개월 경과시점까지” 또는 “계약일 이후 만 13개월 경과시점부터 만 120개월 경과시점까지”)동안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1형(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에 한함)
지급내용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이 일시납보험료가 되도록 매월 계산한 생활자금 해당액

(주) 1. 연금계약 적립액이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위험보험료 및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또한, 보험계약일부부터 1년간 공시이율에 연복리 3.0%의 “초년도 보너스적립이율”을 더하여 연금계약 적립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계약이 이율확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초년도 보너스적립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생활자금 계산시 기준이 되는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은 초년도보너스적립이율이 적용되지 않은 연금계약 적립액입니다.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 (약관 제5조 제3호)

구분	지급사유	지급내용
종신 연금형	보증 기간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연금지급형태> - 정액형 - 5%, 10% 체증형(체증기간 10년) </div>
	보증 금액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시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확정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동안 분할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상속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 (주) 1. 연금계약 적립액이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위험보험료 및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또한, 보험계약일부부터 1년간 공시이율에 연복리 3.0%의 “초년도 보너스적립이율”을 더하여 연금계약 적립액을 계산합니다.
2.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니다.
3.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체증형의 경우, 체증기간 10년간의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에 체증률 5% 또는 10%로 체증한 금액을 지급하며, 체증기간 10년이 경과한 이후(11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체증기간 최종년도(10차년도)에 지급된 연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년 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지급주기(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7.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확정연금 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년, 15년 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지급주기(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 중 계약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8.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 개시 후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9.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10. 1형(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의 경우, 계약자가 미지급된 생활자금의 수령 방법을 연금지급 개시일 전일까지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생활자금을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더하여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액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 표2) 재 해 분 류 표

1.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주) 1.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 표3) 해지환급금의 계산

1. 이율확정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시장가격조정률(MVA) 적용

- (1) 계약이 보험계약일부터 이율확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때에는 **연금계약 적립액에 (1- 시장가격조정률(MVA))**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다만,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생활자금에 대하여는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이율확정기간 중 계산되는 (1)호의 연금계약 적립액은 1형(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 및 2형(거치형, 10년 이율확정형)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간 연금계약의 적립액에 적용하는 초년도 보너스적립이율 연복리 3.0%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된 금액입니다.
- (3) 시장가격조정률(MVA)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MVA = 1 - \left(\frac{1 + A}{1 + B + 0.5\%} \right)^{N/12}$$

- 주) ① A: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
- ② B: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환급금 계산시점의 공시이율
- ③ N: 잔여월수 (해지환급금 계산일부터 이율확정기간 말일까지의 월수로 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절상하여 계산합니다)

- 시장가격조정률(MVA)이 20% 이상인 경우는 20%를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시장가격조정률(MVA) 적용 취지
이 보험에서 10년의 이율을 확정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회사는 10년 만기구조를 갖는 채권 등에 투자하여 자산과 부채를 대응시키는 투자전략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등의 가격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하락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상승하게 됩니다. 이 보험의 이율확정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당 자산을 매각하여 처분함에 따라 손실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장가격조정률(MVA)은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의 시장가격(매각손실 또는 이익)을 해지환급금에 반영하기 위한 비율로 적용됩니다.

2. 시장가격조정률(MVA) 계산 예시

(1) 계약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보다 2.0% 높은 경우

구분		미국달러형	중국위안화형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 (①)		3.25%	3.25%
해지시점의 공시이율 (②)		5.25%	5.25%
시장가격 조정률 (③)	1년	19.37%	19.37%
	2년	17.42%	17.42%
	3년	15.42%	15.42%

구분		미국달러형	중국위안화형
시장가격 조정률 (③)	4년	13.37%	13.37%
	5년	11.27%	11.27%
	7년	6.93%	6.93%
	10년	0.00%	0.00%

- (주) 1. 위의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은 시장가격조정률의 계산예시를 위하여 가정한 공시이율이며, 실제 계약상의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2. 시장가격조정률(③) = $1 - \left[\frac{(1 + ①)}{(1 + ② + 0.5\%)} \right]^{(잔여월수/12)}$

(2) 계약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보다 낮은 경우

구분		미국달러형	중국위안화형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 (①)		3.25%	3.25%
해지시점의 공시이율 (②)		1.50%	2.00%
시장가격 조정률 (③)	1년	-11.59%	-6.78%
	2년	-10.23%	-6.01%
	3년	-8.90%	-5.24%
	4년	-7.58%	-4.47%
	5년	-6.28%	-3.71%
	7년	-3.72%	-2.21%
	10년	0.00%	0.00%

- (주) 1. 위의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은 시장가격조정률의 계산예시를 위하여 가정한 공시이율이며, 실제 계약상의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2. 시장가격조정률(③) = $1 - \left[\frac{(1 + ①)}{(1 + ② + 0.5\%)} \right]^{(잔여월수/12)}$
 3.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최저보증이율(중국위안화형 계약의 경우 연복리 2.0%, 미국달러형 계약의 경우 연복리 1.5%)을 적용하였습니다.

(별 표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 11 조 제 2 항 및 제 31 조 제 2 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사망보험금 (제5조 제1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생활자금 (제5조 제2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연금개시시점(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날) 이내	공시이율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연금 (제5조 제3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날) 이내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날) 이후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31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생활자금 및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소멸시효(제37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제11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